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9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윤종오
윤후덕 · 윤준병 · 조계원
박성준 · 이수진 · 김문수
손 솔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 · 불안 ·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 ① 대학의 장은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이하 “마음건강”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 및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 ① 대학의 장은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이하 “마음건강”이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대학의 장은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u> <u>③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④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 및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